

1. 개정 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사유(제12조의9제2항)에 제4호 ‘나무병원의 종류’가 신설되어 종전 제4호가 제5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번호 변경(안 제19조의7제1항, 별지 제10호의15서식)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를 ‘영 제12조의9제2항제5호’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를 각각 “영 제12조의9제2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5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및 제4호 중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제4호”를 각각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나무병원 종류		법인등록번호	
변경내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예) 상호, 명칭변경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나무병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2항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확인	➔	대장정리 및 등록증 기재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		처 리 기 관 (시·도)		처 리 기 관 (시·도)		처 리 기 관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 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u>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u> 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 ----- -- <u>영 제12조의9제2항제5호</u> -- ----- --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u>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u> 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 ----- -- <u>영 제12조의9제2항제5호</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